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기술사용료 설계변경 미 이행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경상남도(○○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의 9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4. 12. 29. ○○○○시 ○○구 ○동 ○○○-○에 있는 ○○○○(주)(대표자 ○○○) 외 4개사⁹⁸⁾와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21,903,200,000원⁹⁹⁾으로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30. 착공하여 2017. 12. 3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신기술의 기술사용료가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다.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2014. 12. 10.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 제6조에 따르면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¹⁰⁰⁾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상남도(○○과)에서는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반영된 ‘단계적 긴장력 도입에 의한 PSC I형 거더의 제작기술’¹⁰¹⁾(신기술 제221호)의 신기

98) ○○ ○구 ○○동 ○-○에 있는 ○○○○(주) (대표자 ○○○), ○○○도 ○○시 ○○동 ○○-○○ ○○○○ ○층에 있는 (주)○○○○○○○○(대표자 ○○○), ○○○도 ○○시 ○○동 ○○○-○에 있는 (주)○○○○(대표자 ○○○), ○○○도 ○○시 ○○동 ○○-○에 있는 ○○○○(주) (대표자 ○○○)

99) 2016. 4. 20. 총 공사부기금액 153,508,100,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100)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 -How費)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101) 긴장력을 거더의 제작 단계에 따라 수차에 나누어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거더의 높이를 현격히 줄이거나 경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임

술 개발자인 (주)○○○○○이 2008. 10. 2. 위 공사의 시공자인 ○○○○(주)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으므로 기술사용료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2016. 11. 30. 감사일 현재까지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어 42,542,435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여 반영할 필요가 없는 기술사용료 42,542,435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